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5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이수진・박선원・송옥주

민형배 · 서영교 · 백승아

이기헌 • 박홍근 • 서미화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 및 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(금융위원회 고시)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·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,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,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 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,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.23% 수준으로 최고수준(2.3%)에

근접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3제3항).

법률 제 호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제3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(이하 "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"이라 한다)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유리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1.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 용카드가맹점(이하 "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"이라 한다)
-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3(가맹점수수료율의 차	제18조의3(가맹점수수료율의 차
별금지 등) ①·② (생 략)	별금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
	승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	③
드업자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	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
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	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
카드가맹점(이하 "영세한 중소	<u>점</u>
신용카드가맹점"이라 한다)에	
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	이 경우 우대수수료
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	율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유리한
다. <u><후단 신설></u>	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1.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
	중소신용카드가맹점(이하 "영
	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"이
	<u>라 한다)</u>
<u><신 설></u>	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
	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
	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
	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
	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
	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	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
	시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